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현 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조례 부칙에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